직원 인권침해 예방 캠페인

늘봄실버요양센터

직원/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존중 수칙

인권침해 유형

1

폭언

폭력 뿐만 아니라 욕설,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

2

폭력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행위

3

공포심 불안감 유발

악의에 찬 언어로 위협하는 행위

4

성추행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행위

존칭을 사용하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여 함께 따뜻한 블레스를 만들어 갑니다.

직원 인권침해 예방 캠페인

늘봄실버요양센터

직원/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존중 수칙

인권침해 대응방법

1 단계 :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2 단계 :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3 단계 : 응대종료, 경찰신고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 보고 하고, 6하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신고는 112